

# 메디칼 회수

##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메디칼 수혜자에 대한 회수 규정



**CANHR**

장기요양 정의와 옹호

1803 6<sup>th</sup> STREET

BERKELEY, CA 94710

이 소책자는 2023년 7월에 개정했습니다.

소개.....	4
메디칼이란 무엇인가? .....	6
메디칼 회수란 무엇인가?.....	6
2017년 1월 1일 이전의 법은 어떠했습니까? .....	8
메디칼 회수 개혁.....	8
회수의 대상이 되는 메디칼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9
2017년 1월 1일 이후 회수 대상 메디칼 서비스.....	9
재산 회수 면제 대상.....	11
공증대상 재산으로 한정된 재산 회수.....	11
재산 회수 청구에서 면제되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13
어떻게 하면 집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15
부동산 회수 청구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17
메디칼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17
부동산 회수 청구 검토.....	19
면제 혜택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지불합니까? .....	21

## 소개

본 소책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칼 회수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의 회수법이 적용됩니다. 이 소책자는 이전 법과 신규 법 모두에 적용 가능한 규칙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본 가이드를 읽고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 [canhrmail@canhr.org](mailto:canhrmail@canhr.org) 또는 전화 (800) 474-1116로 CANHR 사무소에 연락하여 변호사와 논의하십시오.



## 메디칼이란 무엇인가?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자산부족층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메디칼 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자격은 연령, 장애, 소득 또는 자산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거래소입니다. 메디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받은 세액 공제 또는 보조금은 메디칼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 메디칼 회수란 무엇인가?

메디칼 수급자가 사망하면, 주정부는 메디칼이 지불한 특정 서비스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메디칼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나 생존자들에게 사망한 개인을 대신하여 메디칼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재산 회복 청구"를 발송합니다.

주정부는 집에 유치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집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징수를 시도할 것이고 대상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 “자발적 유치권”에 대해 협상할 것입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의 법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20년 이상 캘리포니아 법은 55세 이상일 때 메디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나 요양원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를 허용해 왔습니다.

### 메디칼 회수 개혁

메디칼 회수 개혁 조항을 통합한 SB 33(Hernandez) 및 SB 833 덕분에 메디칼 회수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회수법은:

- 메디칼 대상 배우자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와 등록된 동거인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금합니다;
- 5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양원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회수를 캘리포니아에서 공증한 자산으로만 제한합니다;
- 주정부가 자발적 유치권에 부과할 수 있는 이자의 액수를 제한합니다;
- 회수 대상 부동산이 보통가치의 주택이 아닌 주택, 즉 해당 주택의 공정시장가치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 평균가격의 50% 이하인 주택일 때 주정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로 청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 주 정부가 현재 또는 전 수혜자 또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 회수 가능한 메디칼 지출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회수의 대상이 되는 메디칼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개인의 경우 메디칼 회수는 다음과 같은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 간호시설 서비스, 특정 주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관련 병원 및 처방약과 관련한 메디칼 혜택을 받았을 때 55세 이상인 수혜자.
- 간호시설, 일반요양시설, 그 밖의 의료기관에 '영구적으로 입원'해있거나 통지 및 심리의 기회를 거친 후 퇴원 및 귀가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55세 미만인 수혜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회수 대상 메디칼 서비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주정부는 요양원 간호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는 한, 의사의 방문, 처방약 비용 또는 관리 의료 보상과 같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규 회수 조항은 연방법에 따라 회수가 필요한 서비스로만 회수를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요양원 간호;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원조형 보호(ICF/DD);

- 다음을 포함하는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생활 지원 면제 프로그램,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대체 치료, AIDS,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및 커뮤니티 서비스,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재가 의료 서비스 선택 요양 프로그램;

- 요양시설 서비스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제공되는 관련 병원 및 처방 의약품 서비스.

## 재산 회수 면제 대상

- 2017년 1월 1일 이후 메디칼 수급자가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으로 넘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메디칼 배우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청구가 금지되고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나 등록된 동거인도 회수 대상 메디칼 서비스를 받은 경우, 회수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 재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존하는 미성년/장애 아동:** 메디칼 수급자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 주 정부는 회수할 수 없으며, 청구는 영원히 금지됩니다. 메디칼 회수 청구 통지일 현재 메디칼 수급자가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 아동으로 남아 있는 경우 주 정부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으며 청구는 영원히 금지됩니다. 자녀는 메디칼 수급자와 함께 살 필요가 없고 부동산 상속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법이며 새로운 법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공증대상 재산으로 한정된 재산 회수

주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상대로 지급된 메디칼 혜택의 금액 또는 부동산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개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공증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회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생존 신탁, 공동

임차권, 생존권 및 종신 부동산권을 통해 이전된 재산은 더 이상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조립식 주택과 이동식 주택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회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동식 주택이 있는 곳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부동산

면제와 연관된 부동산 가치에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회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분배되는 자산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보통 캘리포니아에서 공증 대상이 됩니다.

#### 예 1:

민디 부인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집(총 가치 20만 달러)이 있었고 유언으로 그 집을 딸에게 남겼습니다. 메디칼은 민디 부인의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5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주정부는 5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디 부인의 생존

#### 예 2:

민디 부인은 민디 무어 가족 신탁으로 집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생존 신탁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증

## 재산 회수 청구에서 면제되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개인의 경우 다음 재산은 재산 회수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 전에 양도된 재산 - 더 이상 수혜자 명의를 아닙니다.

- 공증의 대상이 아닌 재산, 예를 들어, 생존 신탁, 공동 임차, 사망 계좌에 대한 지분, 생존권, 종신 부동산.

이동식 주택, 기타 조립식 주택, 개인 재산으로 \$ 184, 500 이하의 가치가 있고 부동산으로 \$61,500의 한도가 있는 소규모 자산.

- 보통가치의 주택: 사망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 내 주택 평균가격의 50% 이하의 공정시장가치를 가진 주택. (참고: 이것은 새로운 재정난에 의한 면제이고, 면제 신청자가 이것이 "보통가치의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정부는 그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 생명 보험: 생명보험증권에 수혜자를 1인 이상 기재하는 경우.\*
- 은퇴연금 계좌: 은퇴연금 계좌에 수혜자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 부동산이 명명된 수혜자이거나 부동산으로 반환되지 않는 한.



**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한 명 이상의 생존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하면 집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 집을 신탁이나 다른 계약에 맡겨서 그것이 공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선물 및 부동산 양도 조항을 포함한 영구 위임장을 실행하여 자격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집에 대한 공증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개인의 경우:

- 면제 대상자가 생존하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특정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산 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이 공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전을 고려하십시오. 메디칼 수급자는 사망 전에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면제 재산을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세금 효과 주의)



2017년 1월 1일 메디칼 법이 대폭 변경되었지만 회수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위험 자산 계획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완전한 부동산 이전 전에 세금 결과와 집을 조기에 잃을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회수 청구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디칼 수혜자들에게서 제기되는 가장 잦은 불만 중 하나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메디칼 수혜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은 연간 1회 \$5의 수수료로 자산 회수 대상 메디칼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청 양식인 DHCS 4017은 다음의 회복 지점 웹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Pages/TPLRD\\_ER\\_cont.aspx](https://www.dhcs.ca.gov/services/Pages/TPLRD_ER_cont.aspx)

## 메디칼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부동산 변호사, 집행인, 상속인 또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메디칼 회수 부서에 법적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메디칼 또는 사회보장 사무소에 알리는 것은 올바른

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새크라멘토의 회수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사망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사망통지서" 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의료 서비스 재산 회수 부서장, MS-4720**  
**P.O Box 997425**  
**Sacramento, CA 95899-7425**

**조언:**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과 같은 우편배달 증명을 받으십시오.

**경고:** 일반적으로 메디칼 수급자가 사망한 후 메디칼 회수 설문지가 상속인이나 생존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양식에 부동산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망통지서(간단한 메모 포함)와 사망증명서 사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공증의 대상이 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부동산 담당자는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법률 서비스 부서인 CANHR에 전화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회수 청구 검토

1. 7페이지 '부동산 회수 면제'에서 상속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항목별 기재를 검토합니다. 약국과 같은 특정 제공자의 청구에 대한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하는 약국에 문의하여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3. 다음 항목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를 검토하여 목록에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재가 지원 서비스(IHSS)

- 적격 의료 보험 수혜자(QMB), 특정 저소득 의료 보험 수혜자(SLMB), 적격 개인, 적격 장애인 및 근로자, QMB Plus 및 SLMB Plus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의 비용.

이 중 청구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회수 징수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오류를 수정합니다.



4. 장례비, 재산정리비, 변호사 비용 등을 공제해 청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제 혜택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지불합니까?

상속인이나 생존자가 위의 면제 조건들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나 보통가치의 주택과 같은, 재정난에 의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그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조언:** 재정난에 의한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경우 1-800-474-1116 번으로 CANHR 에 전화하십시오.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난에 의한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청구를 무시하면 주 정부는

법무장관실로 청구를 전달하며 법무장관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정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수 부서와 협력하여 청구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자의 지불 능력을 타진합니다.

1.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저금리 대출 또는 지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나 재정난에 의한 포기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자발적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 배치 외에도, 부서는 상속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매달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이 “자발적” 선취권이 연 7%의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상기 선취권에 대한 이자는 연간 잉여금 투자 기금 이자([http://www.sco.ca.gov/ard\\_yield\\_rates.html](http://www.sco.ca.gov/ard_yield_rates.html))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이자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약 2.77%이며, 3개월마다 변경되거나 7%의 단순 이자 보다 더 낮은 이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숙지할 사항:** 새로운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날짜 이전에 사망했고 그들의 재산이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CANHR에 연락하여 재산 회수 청구를 받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과 달리 청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 복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canhr.org/medi-cal-recovery-information/>

# CANHR

요양원 개혁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옹호자들

*장기요양 정의와 옹호*

1803 Sixth Street

Berkeley, CA 94710

전화: (800) 474-1116

팩스: (415) 777-2904

canhrmail@canhr.org

**www.canhr.org**

저작권 © 2014, 2023년 7월 개정.

허가에 의해서만 재인쇄 가능.